##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- 제1조 (목적)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00소방본부와 00고등학교 학생, 00고등학교장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)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18년 6월 11일부터 ~ 2018년 10월 10일로 한다. 이 기간 중 교육기간은 6.11.부터 7.6.까지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00소방본부내의 소방특정대상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- 제3조 (현장실습방법) 현장실습은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이 작성한 화재안 전특별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- 제4조 (소방본부장 등의 의무) "소방본부장 등"은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 - 1. "현장실습생"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, "현장실습생"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
  - 2.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공구, 재료 등을 제공할 것
  - 3.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"현장실습생"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
  - 4. 고등학교의 장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
  - 5. "현장실습생"에게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
  - 6. "현장실습생"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
- 제5조(현장실습생의 권리) ① "현장실습생"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"현장실습생"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

-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"현장실습생"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(현장실습생의 의무) "현장실습생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
- 2.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
- 3.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
- 4.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"소방본부"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
- 제7조(현장실습 시간과 휴식)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7시간으로 하되 "소방본부장 등"이 "현장실습생"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,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  -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: (동의, 부동의)(해당사항에 o표)
  -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60분(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10분)으로 한다.
  - ③ 휴일 및 휴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을 준용하되,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.
  - ④ "사업주"는 야간(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) 및 휴일에 "현장실습생"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현장실습생 특별보호) ①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을 「근로기준법」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、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.
  - ② ("현장실습생"이 여성인 경우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제9조(현장실습 수당, 식비 및 용품 등)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단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

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.

## - 다 음 -

- 2018년 6월 11일부터 ~ 2018년 10월 10일까지 매월(일) 1,570,000 원
- ② "소방본부장 등"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수당과는 별개로 소정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.
- ③ "소방본부장 등"은 현장실습기간 중 "현장실습생"에게 현장실습교재, 작업복, 실습재료, 개인용 공구, 안정보호구,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
- 제10조(복리후생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에게 식당, 휴게실, 의무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- 제11조(현장실습의 평가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 소속 학교의 장"이 정한 기준에 따라 "현장실습생"의 현장실습내용 평가를 요구할 경우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"현장실습생 소속 학교의 장"에게 통보한다.
- 제12조(안전.보건상의 조치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교육 실시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.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제13조 (재해보상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.
- 제14조(상벌) ①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. ②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이 현장실습계약서,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"현장실습생"

-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"현장실습생"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.
- ③ 징계사유, 징계종류, 징계절차 등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5조(현장실습내용의 변경) 현장실습생의 소질.건강.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"소방본부장 등"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려면 "현장실습생"과 "현 장실습생 소속 학교의 장"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16조(현장실습계약의 해지) ① "소방본부장 등"과 "현장실습생"은 현장실습기 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"소방본부장 등"과 "현장실습생"은 "현장실습생 소속 학교의 장"과 미리 협의한다.
  -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현장실습중단 방지)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수료증명서) ① "현장실습생"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"소방본부장 등"은 "현장실습생"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.
  - ② "소방본부장 등"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"현장실습생"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"현장실습생"에게 교부한다.
- 제19조 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을 준용한다.

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"사업주", "현장실습생", 교육기관의 대표가 기명날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. 6. .